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31

발의연월일 : 2024. 12. 16.

발 의 자:전진숙・임호선・김 윤

김선민 · 김한규 · 전용기

권칠승 • 이훈기 • 강훈식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 1,000억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 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 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 설).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그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조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설치한다.

- ④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대상 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운용, 구성, 소집, 심의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
	원)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
	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
	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
	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
	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
	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
	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u>1. 「의료법」 제87조 및 제87</u>
	조의2제2항제1호·제1호의2·
	제2호(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범죄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
	호·제1호의2·제2호 및 제95
	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
	한다)의 범죄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한다.
- ④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 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운용, 구성, 소집, 심의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